

# ◎ 農地制度

○ 現行: §122

第122條 農地의 小作制度는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금지된다. 다만, 農業生産性의 提高와 農地의 合理的인 利用을 위한 賃貸借 및 委託經營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인정된다.

○ 民主黨: §120  
現行과 같음

○ 民主黨: §117

第117條 農地의 小作制度는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禁止된다. 다만, 不可避한 事情으로 發生되는 小作農地는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適切한 措置를 한다.

○ 農地의 小作은 耕者有田의 大원칙에 따라 지켜져야 할 것이나 오늘날 農村人口의 감소와 産業構造의 高度化에 따라 農業機械化 내지 企業的 營農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어 農地의 賃貸借과 委託經營은 農業 및 農村의 發展에 매우 중요한 要素임

○ 이에 따라 國會은 農地賃貸借管理법은 제정하여 1977. 10. 1부터 施行하여 하고 있음.

○ 民主黨의 「분가퇴환」시정으로 발생 하는 小作農地는... 「商土力」의 促進을 위한 法은 法律表現으로서는 부적당하다고 할 것임.